

농어촌학생(정원외)

지원자격

〈고등교육법 시행령〉 제 29조 제2항 제14호 '가'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〈고등교육법 시행령〉 제29조 제2항 제14호 '가'목
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학생

▶ 유형 I

- ①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소재지 학교에서 **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(6년 교육과정)을 이수**하고
- ② 해당기간(6년) 동안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**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경우**

▶ 유형 II

- ①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소재지 학교에서 **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 (12년 교육과정)을 이수**하고
 - ② 해당기간(12년) 동안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**학생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**
- *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합니다.

→ 단,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
- ① 대상 기간 동안 전체 또는 일부라도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학하거나 거주한 자 (유형 I 은 부모 거주기간 포함)
- ②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 체육고, 국제고에서 재학한 자
-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
- ④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
[유의사항]

■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

- ① 학생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가 동일한 지역이 아니거나
- ②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

■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

- ①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가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서 '동'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이거나
- ②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가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'동'지역에서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

■ 2개 이상의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재학한 경우

해당 학교의 소재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.

V. 전형별 세부사항

농어촌학생(정원외)

지원자격

■ (유형 I)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사망, 실종 또는 이혼 등의 경우

- ① 부모의 사망, 실종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이어야 하며
- ② 이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.

구분	부모에 해당하는 자
부모의 사망 또는 실종	· 법률상 사망일(실종일)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·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이 있는 자
부모의 이혼	·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·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자
학생 본인이 입양자인 경우	·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 ·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자

- 태권도학전공은 위 해당자로서 태권도 공인 1단 이상인 자

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

(1,000점 만점)

전 모집단위(학생부 100%)



※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**최대 10점**(총점에 가산합니다.)

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

p. 3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수능 최저학력기준

한의예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영영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- 탐구의 경우 2과목 평균 등급 적용 (평균 산출 시 소수점 버림) - 직업 탐구 제외 · 수능 최저학력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학(미적분 또는 기하)과 탐구(과학 2개) 모두 반영 시 반영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- 그 외 반영 시 반영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
간호학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영영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어, 수학, 탐구 3개 영역 중 2개 영역 - 탐구의 경우 상위등급 과목 적용 - 직업 탐구 제외 · 수능 최저학력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영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

제출서류

(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)

1)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지원자

구분	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	제출서류
2015년 2월 졸업자 ~ 2023년 2월 졸업예정자	동의	별도 제출서류 없음
	비동의	학교생활기록부 1부
2014년 2월 및 그 이전 졸업자	해당사항 없음	학교생활기록부 1부

2) 지원자격 증빙서류

유형 I	<p>[공통]</p> <p>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 ※ [입학 홈페이지]-상단의 [입시정보]-[서식자료실]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.</p> <p>②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</p> <p>③ 지원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</p> <p>④ 지원자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[주소 변동사항(변동일, 사유) 기재]</p> <p>[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]</p> <p>①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- 2007년 이전 사망(실종) 시 제적등본 1부 - 2008년 이후 사망(실종) 시 기본증명서(상세) 1부</p> <p>② 부모가 이혼한 경우 - 지원자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및 친권 또는 양육권(자녀교육권)이 있는 부모 또는 모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</p> <p>③ 지원자 본인이 입양자인 경우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</p> <p>④ 부모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인 경우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</p>
유형 II	<p>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 ※ [입학 홈페이지]-상단의 [입시정보]-[서식자료실]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.</p> <p>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</p> <p>③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[주소 변동사항(변동일, 사유) 기재]</p>

3)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 지원자의 태권도 공인단증(품증)은 대학에서 국기원 온라인 검색을 통해 취득현황을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.

※ 제출장소: (우) 26339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, 본관 3층 입학팀

※ 제출기한: 2023.1.4.(수) 17:00까지 대학 도착분